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630
----------	------

제안년월일: 2020년 6월 22일
제안자: 기획경제위원장

1. 주 문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안장되어 있어 국립묘지의 존엄과 영예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원천적으로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건의함.

2. 제안이유

-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강제 이장을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해야 할 공간인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함께 안장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국회에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는 이들의 정비 전까지 친일행적비를 세워 역사적 교훈으로 삼도록 건의함.

3.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광복 75주년을 맞은 우리 민족은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신성하고 영예로운 국립묘지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행위에 부역하고 협력한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다수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 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11명(국립서울현충원 7명, 국립대전현충원 4명)이 안장되어 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친일인사로 그 범위를 넓혀보면 63명(서울 37명, 대전 26명)이 안장되어 있다.

순국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을 추모하는 국립현충원에 친일반민족 행위자가 함께 안장되어 있는 부끄러운 현실은 우리 역사의 모욕이며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대 국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강제 이장의 근거를 마련하려 했으나, 임기만료로 안타깝게 좌절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족의식을 심어주고 반민족적 친일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우리 민족의 성지인 국립현충원의 존엄과 영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즉각 정비해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의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 원천적으로 안장될 수 없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셋째,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소의 정비 이전까지 친일행적비를 세워 이들의 친일행적을 알림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라!

2020. 6.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